

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5. 3. 30.
행정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5년 3월 24일 이동주 의원 외 11명
- 나. 회부일자 : 2015년 3월 24일
- 다. 상정일자 : 제195회 임시회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(2015년 3월 30일)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▣ 제안설명자 : 이동주 의원

가. 제안이유

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제111조제1항에 선거구민에게 의정활동보고회 개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3조제5호에서는 정치적 이용 목적으로 동(洞)자치회관 대관을 이용할 수 없도록 배제하고 있어, 이를 상위법인 공직선거법에 맞도록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마포구 자치회관과 주민자치위원회는 동(洞)자치회관을 정치적 이용 목적을 배제하여 운영하여야 함.

다만,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 보고회는 예외로 한다.
(안 제3조제5호 단서 신설)

3. 검토보고 (전문위원 김은모)

- 『공직선거법』 제111조제1항에서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보고회 등 집회, 보고서를 통하여 의정활동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직무상의 행위 그 밖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의정활동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·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·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외의 방법으로는 의정활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,
- 대법원 판례에서도 『공직선거법』 제111조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의정활동보고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선거구민에게 의정활동보고가 선거운동의 방법 및 회수 등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선거법의 제한 규정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것을 차단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음(대법원 2009.4.23. 선고)에 비추어 볼때, 『공직선거법』에서 허용하는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의 순수한 의정활동보고회 등은 정치적 이용목적이 없다고 보아 우리 구 동(洞)자치회관 대관 이용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음.
- 개정 주요내용으로는
안 제3조제5호에서 마포구 자치회관과 주민자치위원회는 동(洞)자치회관을 정치적 이용 목적을 배제하여 운영하여야 함. 「다만,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 보고회는 예외로 한다」 라고 단서규정을 신설함.
- 검토의견으로는 『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』 제3조제5호에 따르면 정치적 이용 목적으로는 동(洞) 자치회관 이용을 배제하고 있는 바, 이는 『공직선거법』 제111조제1항에서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에게 허용하고 있는 순수한 의정활동보고를 보장하지 못함은 물론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규정으로, 우리 구 조례에서 불분명한 의정활동 보고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구분하여 첫째, 정치적 목적으로 동(洞) 자치회

관 이용은 계속 배제하겠지만 둘째, 「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 보고회는 예외로 한다」라고 규정함으로써 상위법인 『공직선거법』에서 허용하고 있는 순수한 의정활동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함은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적합한 개정내용임.

- 따라서 본 개정 조례안은 2015.3.24.~3.28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『공직선거법』에 저촉됨이 없고, 또한 『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』 제3조제5호 단서 규정에서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 보고회는 『공직선거법』에서 허용하고 있는 정치적 이용 목적을 가지지 않는 순수한 의정활동보고로 보고 정치적 이용 목적 배제대상에서 예외로 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, 또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의정활동 보고장소로서 읍·면·동주민자치센터에서 의정활동보고회 등을 개최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례【『의정활동보고 관련 선거법 안내』(마포구선거관리위원회-363호, 2015.2.12)】로 보고 있어, 이번에 의정활동보고회를 정치적 이용 목적에서 예외로 한 우리 구 조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,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요지 : 없음

8. 기타사항 : 없음